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 포함 대상 개발사업 명시(안 제5조)

-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다양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임.
- 2) 이에 위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계획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하던 것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설치·증설”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설치·증설 계획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1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실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설치·증설 계획을 말한다. <u><신 설></u>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 ----- ----- 다음 각 호의 ----- ----- ----- ----- -----.
<u><신 설></u>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설치·증설 계획
<u><신 설></u>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u><신 설></u>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u><신 설></u>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u><신 설></u>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u><신 설></u>	<u>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u>
<u><신 설></u>	6. 「<u>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u>」 제2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u><신 설></u>	7. 「<u>기업도시개발 특별법</u>」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u><신 설></u>	8. 「<u>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u><신 설></u>	9. 「<u>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
<u><신 설></u>	10. 「<u>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u>」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u><신 설></u>	11.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u><신 설></u>	12. 「<u>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u>」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u><신 설></u>	1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실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
---------------------------	---